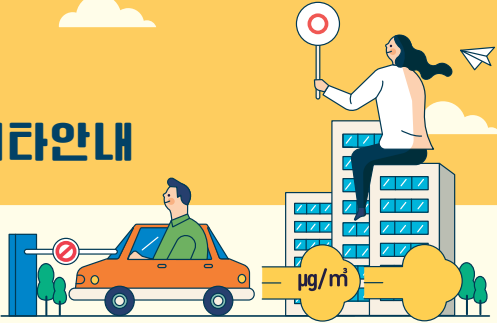


기타안내


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
고농도 미세먼지(PM_{2.5})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

- 발령일시 : 당일 17:00 이후(시행 : 익일 06~21시)
- 발령기준(하나의 조건이상 충족 시 발령)
 - ① 당일 0~16시 평균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, 익일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예상
 - ② 당일 4개 시·군이상 주의보·경보 발령, 익일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예상
 - ③ (예보) 익일 75 $\mu\text{g}/\text{m}^3$ 초과예상

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.

재난문자가 수신이 안 된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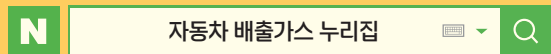
-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(emissiongrade.mecar.or.kr)에서 SMS 안내 서비스 신청
-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



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

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
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>

또는 ☎ 1833-7435(콜센터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
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

저공해 조치



운행제한 안내



시행일시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06~21시)

※ 토요일, 공휴일 제외(평일에만 단속)

제한대상 :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
제외대상

긴급·장애인·국가유공자 자동차, 경찰·소방 업무용 자동차,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

※ 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 신청차량('22.12.31까지)
저감장치 미개발·장착불가 차량('23.12.31까지)

시행지역 : 도내 8개 시

(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양산시)

시행방법 :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(CCTV)

위반 시 조치

과태료(1일 1회 10만원) 부과
(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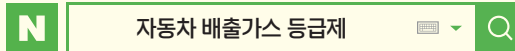
저공해조치 신청 안내



신청방법

① 오프라인 신청 : 차량 등록지 시·군 환경과에 신청

② 온라인 신청



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>

③ 전화신청 : 경상남도 콜센터(055-120)

차량등록 시·군 환경과

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



운행제한 제도 안내

비상저감조치(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)

- 대상지역 : 전국
- 단속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
- 단속시간 : 06~21시(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)
- 유예대상 : 시·도별 상이
- 과 태 료 : 10만원/일

계절관리제('22.12월 ~ '23.3월, 매년시행)

- 대상지역 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부산, 대구
※ 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은 시범단속
- 단속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
- 단속시간 : 06~21시(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)
- 제외대상 : 긴급·장애인·국가유공자 차량, 경찰·소방 업무용 차량 등
- 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 신청·저감장치 미개발(장착불가)·영업용 차량
※ 부산·대구지역 '23.11.30.까지 단속 유예
- 과 태 료 : 10만원/일

녹색교통지역(365일 상시)

- 대상지역 : 서울 한양도성 내(종로구, 중구)
- 단속대상 : 5등급 차량
- 단속시간 : 06~21시
- 과 태 료 : 10만원/일(3회 이상 20만원)

수도권 노후경유차(365일 상시)

- 대상지역 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
- 단속대상 :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, 종합검사 불합격 등
- 단속시간 : 24시간
- 유예대상 : 매연농도 10%미만 차량, 저감장치 미개발·장착불가 차량
- 과 태 료 :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(월1회)